

제283회 임시회  
2009. 9. 11.(금)

# 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회운영위원회  
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-

## 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송은섭 의원 외 7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9년 9월 3일 / 2009년 9월 4일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09년 9월 11일

-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## 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출석일시 : 2009. 10. 13.(화) ~ 10. 14.(수), <2일간>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이유 :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
- 출석대상 : 충청북도지사와 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도와 교육청의 실·국·원장,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

다. 검토의견

-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른 것으로
-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

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요구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○ 지방자치법 제42조(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의 질문 응답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#### ○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(도지사 등의 출석요구)

-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,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,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(개정 2000. 6. 2)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,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